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인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4

발의연월일: 2020. 6. 3.

발 의 자:최인호·이학영·송옥주

임호선 · 박광온 · 김병욱

신영대 · 전재수 · 유관석

황 희・박 정・허 영

오영환 · 장경태 · 강준현

서영석 · 김두관 · 양경숙

이수진 의원(19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「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」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있는 관계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8호의2, 제17조,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18호) 및 「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8호의2를 삭제한다.

제17조,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8. (생 략) 1. ~ 8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8의2. "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" 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 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 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 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7 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. 9. ~ 11. (생략) 9. ~ 11. (현행과 같음) 제17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<삭 제>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행 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 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 청하여야 한다.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

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 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,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·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 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 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,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, 지원 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2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| <삭 제> 에 대한 지원 등)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 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산 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 여야 한다.

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 단다.

제17조의3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이더라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었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삭 제>